#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 - 259호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제재대상 | 내용(회사명, 성명 등) |
|---|---|
| 기 관 | 위솔자산운용㈜ |
| 임 원 | 甲, 乙, 丙 |

## 2. 조치내용

○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 甲에 과태료 5백만원 부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0조에 따른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에 대하여 乙에 과태료 3.6백만원, 丙에 과태료 7.2백만원 부과

## 3. 조치이유

### 가. 지적사항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하나,

- 위솔자산운용㈜ 甲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로 매매사실 등 매매명세를 위솔자산운용㈜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나,

- 위솔자산운용㈜ 乙은 20xx.xx.xx.(위솔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등록일)부터 20xx.xx.xx.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위솔자산운용㈜ 상근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영리법인인 E로부터 사실상 급여를 받으면서 E 명의의 자문보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

- 한편 위솔자산운용㈜ 丙은 20xx.xx.xx.(위솔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등록일)부터 20xx.xx.xx.까지 위솔자산운용㈜ 상근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F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를 관리하고, G의 등기이사로서 소속 시설관리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2개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

##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3호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